

연구자료 D150-1 / 2001. 1

일본의 과수공제 인수요강

최 경 환
허 덕
박 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빈면

머 리 말

금년 3월부터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준비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전담실무작업팀이 운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것이므로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자료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농작물보험의 역사가 오래되어 자료와 경험이 풍부한 외국의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 자료집은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참고가 된 일본의 과수공제(보험) 관련 자료를 번역 정리한 것이다. 원자료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직역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의미가 전혀 생소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에 한해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였다. 또한 원자료에는 관련 서식이나 양식이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는 생략하였다. 분량도 많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실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각종 양식을 보고자 하는 분들은 원자료를 참조하기 바란다. 원자료명은 「果樹共濟引受要綱」(제정: 1981년 4월 23일 56 농경B제999호, 개정: 1995년 11월 8일 제3178호)이다.

이 자료가 사과와 배 뿐만 아니라 다른 과수들에 대한 농작물보험을 실시하는 데에도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2001.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비

면

● 과수공제 인수요강

1981년 4월 23일

56농경B 제999호

농림수산성 경제 국장 통달
지 사 앞

개정 소화 61년 2월 1일 61 농경B 제40호 · 9월 11일 제2924호, 63년 10월 4일 제2427호, 평성 원년 4월 21일 원농경A 제409호, 평성 3년 8월 22일 3 농경B 제2106호 · 12월 5일 제3462호, 6년 1월 6일 제3473호, 7년 11월 8일 제3178호

농업재해보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소화 55년 법률 제31호)의 시행에 따라, 별지와 같이 「과수공제인수요강」을 정하고, 「과수공제인수요강」(소화 48년 4월 4일자 48농경B 제590호)을 폐지하였으므로 양지하시고, 그 운용에 대하여는 소홀하지 않도록 관할 농업공제단체등을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과수공제인수요강

빈

면

목 차

제1장 통칙	1
제1절 목적	1
제2절 과수공제의 종류 및 공제목적의 종류	1
제3절 공제책임기간	5
제4절 인수의 단위등	7
제2장 표준수확량	8
제1절 표준수확량의 설정	8
제2절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조합등별 단위당 수확량	15
제3장 재해수입공제방식의 기준생산금액	18
제4장 공제금액	20
제1절 수확공제의 공제금액	20
제2절 수채공제의 공제금액	21
제5장 인수	24
제1절 조합등의 인수	24
제2절 연합회의 인수	29
<별표> 수채공제의 수령구분별 환산계수	31
서류양식 목록	32

빈면

제1장 통 칙

제1절 목 적

이 요강은 농업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농업재해보상법시행령, 농업재해보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수확공제의 표준수확량 및 수채공제의 공제가액의 설정에 관한 준칙」 및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기준생산금액 및 기준수확량의 설정에 관한 준칙」을 근거로 삼아 정한 것으로, 과수공제의 인수업무를 적정하고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과수공제의 종류 및 공제목적의 종류

제1. 과수공제의 종류

과수공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수확공제

수확공제에는 다음의 10종류가 있다.

과수공제의 종류등				내 용
수 확 공 제	반상채방식 (피해과수원의 감수분만으로 손해를 파악하는 수 확공제)	감 수 종 합 방 식	일반방식	과실의 감수에 의한 손해를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중, 단축방식 이외의 수확공제
			단축방식	과실의 감수에 의한 손해를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중, 공제책임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서 1986년 1월 23일 농림수산성고시 제137호(농업재해보상법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포함되는 과수등에 대해 주무대신이 정하는 기간을 정하는 등의 건)에서 지정한 수확공제
		특 정 위 험 방 식	감수폭풍우 방식	최대풍속 13.9m/초 이상의 폭풍우 또는 최대순간풍속 20.0m/초 이상의 폭풍우(이하 「폭풍우」라 함)에 의한 과실의 감수에 따른 손해만을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법 제120조의 3의 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신청한 자에 한함)

과수공제의 종류등				내 용
수 확 공 제	특 정 위 험 방 식	감수우박해 방식		우박에 의한 과실의 감수에 따른 손해만을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법 제120조의 3의 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신청한 자에 한함)
		감수동상해 방식		동상 또는 서리에 의한 과실의 감수에 따른 손해만을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법 제120조의 3의 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신청한 자에 한함)
		감수폭풍우 · 우박해방식		폭풍우 또는 우박에 의한 과실의 감수에 따른 손해만을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법 제120조의 3의 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신청한 자에 한함)
		감수폭풍우 · 우박해 · 동상해방식		폭풍우, 우박 또는 동상 혹은 서리에 의한 과실의 감수에 따른 손해만을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법 제120조의 3의 2 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신청한 자에 한함)
	전상쇄방식 (농가 단위 로 증수분과 감수분을 상 쇄하여 손해 를 파악하는 수확공제)	감수종합방식		과실의 감수에 따른 손해를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 (법 제120조의 6 제2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지역 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서 규칙 제33조의 6의 5에서 규정하는 자에 한함)
		품질방식		과실의 감수 및 품질의 저하에 따른 손해를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법 제85조의 제11항(법 제85조의 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지역 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서 규칙 제17조의 2의 2에서 규정하는 자에 한함)
	재해수입공제방식			과실의 감수 또는 품질의 저하를 수반하여 생산금액의 감소에 따른 손해를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수확공제 (법 제120조의 6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농림수산대신이 지정한 지역 내에 주소를 갖는 자로서 규칙 제33조의 6의 7에서 규정하는 자에 한함)

(2) 수체공제

수체공제는 수체의 손해를 공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

제2. 공제목적의 종류

1. 공제목적의 종류

(1) 수확공제

운주밀감, 하밀감, 운주밀감 및 하밀감 이외의 감귤류의 과수(八朔, 뽕깡, 요깡, 네블오렌지, 봉땅, 단깡, 산보깡, 淸見, 日向夏, 세미놀, 不知火 및 河内晩柑을 말함. 이하 「지정감귤」이라 총칭한다.), 사과, 포도, 배(지나 배의 품종에 속하는 배를 제외. 이하 동일), 복숭아, 앵두, 비파, 감, 밤, 매실, 자두, 키위후루츠 및 파인애플.

단, 유리 또는 이와 비슷한 채광성 및 내구성을 지닌 물질로 만들어진 온실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과수를 제외.

(2) 수채공제

(1)에 열거한 과수{매년 결실하는 상태에 달하지 않은 과수(미결과수)를 제외}

결과수령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그 지역에서의 과수의 식재형태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합등(법 제12조 제3항의 조합등을 말함. 이하 동일)에서 이들을 판정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지만, 표준적인 결과개시수령은 대략 다음 표와 같다.

공제목적의 종류	결과개시수령(년)	공제목적의 종류	결과개시수령(년)
운주밀감	5 ~ 8	앵두	6 ~ 7
하밀감	6 ~ 8	비파	3 ~ 5
지정감귤	4 ~ 6	감	4 ~ 5
사과	5 ~ 7	밤	4 ~ 5
포도	3 ~ 4	매실	4 ~ 5
배	3 ~ 4	자두	3 ~ 5
복숭아	2 ~ 3	키위후루츠	3 ~ 4

2.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 및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의 세구분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 및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의 세구분이란 법 제85조 제11항의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 및 법 제120조의 6 제10항의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의 세구분을 말한다.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은 다음 표와 같지만,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의 세구분은, 1993년 8월 31일 농림수산성 고시 제1015호(농업재해보상법 제120조의6 제10항의 규정을 근거로 삼아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대해 주무대신이 정하는 세구분을 정하는 건)에 따라 도도부현별로 설정하고 있다.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		
공제목적의 종류	법 제85조제 11항의 농림 수산대신이 정하는 구분	품종 또는 재배방법에 대응하여 정한 구분 및 각 구분에 속하는 품종 또는 재배방법
운주밀감	1류	조생운주 품종
	2류	보통운주 품종
	3류	주로 비닐이 피복재로 사용되고 있는 특정원예시설(기상 상의 원인에 의해 농작물의 생육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한 시설을 제외)을 이용하여 재배하는 방법
하밀감		하밀감 품종
지정감귤	1류	팔삭, 뽕깡, 붕땅, 네블오렌지, 요깡
	2류	산보깡, 당깡, 清見, 日向夏, 세미놀, 不知火, 河内晚柑
사과	1류	祝, 旭, 키타카미, 輝, 아카네, 쓰가루, 네로26호, 산사
	2류	딜리셔스, 리차드딜리셔스, 스타킹딜리셔스, 골덴딜리셔스, 렛드킹, 렛드골드, 스타크림손, 紅玉, 惠, 陸奥, 렛드슈퍼, 옐로우슈퍼, 웰슈퍼, 학나인, 陽光, 아카기, 千秋, 죠나골드, 世界一, 하쓰아키, 北斗
	3류	王鈴, 國光, 印度, 東光, 王林, 후지, 金星, 아오리3호

포도	1류	< 생략 >
	2류	< 생략 >
	3류	< 생략 >
	4류	< 생략 >
배	1류	幸水, 新水(受粉樹를 포함)
	2류	20世紀, 豊水(受粉樹를 포함)
	3류	기타의 일본배 및 서양배 품종(受粉樹를 포함)
복숭아	1류	< 생략 >
	2류	< 생략 >
	3류	< 생략 >
앵두		< 생략 >
비파		< 생략 >
감	1류	< 생략 >
	2류	< 생략 >
밤		< 생략 >
자두		< 생략 >
키위후루츠		< 생략 >
파인애플		< 생략 >

3. 수체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

수체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이란 법 제120조의 6 제11항의 수체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 등을 말하지만, 당장 미결과수(유목)는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동항에 기초한 류구분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는 공제목적의 종류와 동일한 범위이다.

제3절 공제책임기간

제1. 수확공제의 공제책임기간

1. 수확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다음과 같다. 공제책임기간이 개시하는 期日은 그 지역의 해당 과수의 실태를 감안하여 정관등(법 제86조 제1항의 정관 등을 말한다. 이하 동일)에서 명확하게 하여, 통일적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

(1) 반상채방식중 감수종합방식의 일반방식(이하 「감수종합일반방식」이라 한다.), 전상채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

(가)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앵두, 감, 밤, 매실, 자두 및 키위후루츠
花芽의 형성기부터 해당 花芽에 관한 과실의 수확을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나) 운주밀감 및 비파

春枝의 신장 정지기부터 해당 春枝의 신장 정지기가 속하는 해의 이듬해의 年産의 과실의 수확을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다) 하밀감 및 지정감귤

春枝의 신장 정지기부터 해당 春枝의 신장 정지기가 속하는 해의 다음 다음 해의 年産의 과실의 수확을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라) 파인애플

여름 과실의 수확기부터 해당 여름 과실의 수확기가 속하는 해의 이듬해의 年産의 과실을 수확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2) 반상채방식중 감수종합방식의 단축 방식(이하 「감수종합단축방식」이라 한다.) 및 특정위험방식

(가)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앵두, 감, 밤, 매실, 자두 및 키위후루츠
발아기부터 해당 발아기가 속하는 해의 年産의 과실의 수확을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나) 운주밀감

개화기부터 해당 개화기가 속하는 해의 年産의 과실의 수확을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다) 하밀감, 지정감귤 및 비파

개화기부터 해당 개화기가 속하는 해의 이듬해의 年産의 과실의 수확을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라) 파인애플

여름 과실의 수확기부터 해당 여름 과실의 수확기가 속하는 해의 이듬해의 연산의 과실의 수확을 하는데 이르기까지의 기간

2. “1의 (1) 및 (2)”의 과실의 수확이란 과실을 적기에 채취하여 과수원으로 부터 반출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과수원내에 저장하는 경우는 그 저장하는 때까지를 말한다.

제2. 수체공제의 공제책임기간

수체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은 공제목적의 종류별로 정관등에서 정하는 날부터 1년간이다.

정관등에서 이 始期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인수사무의 효율화등의 관점에서 감수종합단축방식 및 특정위험방식 이외의 수확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의 始期와 맞추는 동시에, 손해평가시기의 통일을 꾀하기 위해 동일 도도부현의 구역 내에서는 가능한 한 동시기로 하도록 한다.

제4절 인수의 단위등

1. 과수공제의 신청은 농업공제조합의 조합원 또는 법 제120조의 3 제1항의 과수공제 자격자(이하 「신청자」라 총칭한다.)가, 수확공제에 있어서는 그 공제목적의 종류별 및 과실의 연산별, 수체공제에 있어서는 그 공제목적의 종류별 및 수체공제의 공제책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1년간)별로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수는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재해수입공제방식에 대하여는 공제목적의 종류(법 제120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한 구분을 제외한다. 이하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라 한다.) 이하 동일) 또는 수체공제의 공제목적 종류등에 의한 구분을 단위로 하여 신청자별로 하도록 한다.

2. 인수면적 및 인수주수는 “1”항의 인수단위별 재배면적 또는 재배주수에 의한다. 다만, 散在樹에 대한 재배면적은 그 수관면적에 의해 견정한 면적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인수면적의 계량단위는 a로 하지만 0.1a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반올림의 방법에 의해 단수를 정리한다.

더욱이, 인수면적 및 인수주수의 산출에 있어서는 품종별·수령별(반상쇄방식에 대해서는 다시 과수원별)의 내역을 명확하게 해 두도록 한다. 이

경우 과수의 수령은 本園에 1년생 묘목을 정식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정식한 해부터 曆年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高接의 경우는 대목의 수령에 의한다.

3. “2”항의 과수원이란, 농도(작업도), 수로, 방풍림, 돌담, 側溝등에 의해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하나의 과수원으로 하도록 한다. 다만, 경사지에서 볼 수 있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작업단위등으로 정리하여 1 과수원으로 하도록 한다.

제2장 표준수확량

제1절 표준수확량의 설정

제1. 반상쇄방식

1. 표준수량표안의 작성

- (1) 조합등은 농업공제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및 과수관련단체의 협력을 얻어 과수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과수(반상쇄방식에 의한 수확공제의 인수가 시행되는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인 과수에 한한다.)에 대하여 농림수산통계자료 기타 관계 기관이 작성한 자료 및 최근년의 수령별 결과수 면적, 신식부면적 및 개폐 면적, 식재주수, 예상 수확량 등의 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삼아,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10a당 및 1주당의 수령별 표준수확량을 기재한 표준수량표안(양식 제1호) 및 수령별 10a당 및 1주당 표준수확량 그래프안(양식 제2호)을 작성하도록 한다.

이 경우의 수령의 간격은 수령별 수확량의 격차를 감안하여 설정하도록 하지만, 대략 성장기는 1년, 성과기는 3~5년, 쇠퇴기는 1~3년을 표준으로 하여 파인애플에 대한 수령의 간격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해당되는 과수에 있어서도 품종, 조합등의 구역을 나눈 지역 또는 재배조건(지형등), 식재형태(밀식 재배, 왜성 재배 등) 등의 요인에 의해 평균 단위 수확량에 격차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그 요인별로 표준수량표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 (2) 표준수량표안 및 표준수확량 그래프안은 3년마다 작성하도록 하지만, 과수재배자의 상황에 변동이 있는 등 필요가 있을 때는, 그 필요가 있는 년별로 작성하도록 한다.
- (3) 조합등은 “(1)”에 의해 표준수량표안 및 표준수확량 그래프안을 작성할 때는 필요에 따라 손해평가회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
- (4) 조합등은 “(1)”에 의해 작성한 표준수량표안 및 표준수확량 그래프안을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2. 표준수량표의 결정

- (1) 도도부현지사는 연합회 및 과수관계단체등의 협력을 얻어, “1의 (4)”에 의해 조합등으로부터 보고된 표준수량표안 및 표준수확량 그래프안을 검토하여 필요에 따라 이것을 수정하도록 한 다음 「수확공제의 표준수확량 및 수체공제의 공제가액의 설정에 관한 준칙」(이하 이 장에 있어서 「준칙」이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당 조합등의 표준수량표(양식 제1호) 및 표준수확량 그래프(양식 제2호)를 결정하여 조합등에 통지하도록 한다.
- (2) 도도부현지사는 “(1)”에 의해 표준수량표 및 표준수확량 그래프를 결정한 때는 농림수산성 경제국장(이하 「경제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3. 연산별 표준수량표의 작성

- (1) 도도부현지사는 과실의 연산별, 조합등별 및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로 다음 식에 의해 연산별 적용계수를 산출하여 조합등에게 통지한다.
 더욱이, 계수의 단위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를 반올림하여 넷째 자리까지로 한다.

$$\text{연산별 적용계수} = \frac{\text{제2절 제1 또는 제2에 의해 도도부현지사가 정한 해당 年産의 단위(10a)당 수확량}}{\text{“2”의 표준수량표에서 얻어진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평균10a당 수확량}}$$

- (2) 조합등은 “(1)”에 의해 도도부현지사가 통지한 연산별 적용계수를 해당 조합등의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관한 표준수량표(요인별로 표준수량표를 작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관한 요인별 표준수량표)에 적용하여 해당 연산에 관한 표준수량표로 하도록 한다.

4. 표준수량량

조합등이 준칙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법 제120조의 6 제11항의 규정에 의해 주무대신이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대해 그 세구분을 정한 때는, 그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대해서는 그 정해진 세구분, 이하「세구분」이라 한다.)별, 과실의 연산별 및 해당 세구분등인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별로 정해지는 표준수량량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 (1) 조합등은 세구분등별 및 해당 세구분등인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별 수령별 결과수면적 또는 수령별 식재주수에 “3의 (2)”의 해당 연산에 관한 표준수량표의 해당 수령에 관한 단위 수확량을 곱하여 얻어지는 수량을 세구분등별 및 과수원별로 합계하여, 세구분등별 및 해당 세구분등인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별 표준수량량 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을 정하도록 한다.
- (2) 조합등은 해당 과수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과원조건 또는 비배관리의 상황이 파악될 수 있을 때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1)”의 방법에 의해 산출된 수량에, 과수공제손해평가요강(1986년 2월17일자 61농경B 제384호 농림수산성 경제국장 통달) 제2장 제1의 규정의 예에 의해 설정한 해당 과수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과원조건지수 또는 비배관리지수를 곱하여 얻어지는 수량을 해당 과수원의 해당 세구분등

에 관한 표준수확량 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3) 조합등은 신청자에 관한 세구분등인 과수의 과거 일정년간의 수확량이 농업협동조합등이 가공 혹은 판매의 위탁을 받거나, 또는 매도한 과실의 수량에 관한 자료(이하 「출하자료」라고 한다.)로부터 파악할 수 있을 때는 “(1)” 및 “(2)”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의 1”에 의한 표준수확량 설정방법에 의해 산출한 수량을 해당 세구분등인 과수를 재배하는 과수원의 결과수면적 또는 식재주수, 수령등을 감안하여, 해당 신청자의 과수원별로 배분하여 얻어지는 수량을 해당 과수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표준수확량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 (4) 조합등은 “(1), (2)” 및 “(3)”에서 정한 표준수확량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 및 다음의 사항을 참작하여 표준수확량을 결정한다.

가. “(1)” 및 “(2)”에 의해 표준수확량 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7) 해당 과수원의 해당 세구분등인 과수에 관한 손해평가실적

(ㄴ) 신청자에 관한 세구분등인 과수에 대하여 高接, 수체의 손상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목의 수령, 高接의 방법, 高接후의 경과년수, 수체의 손상정도, 손상후의 경과년수 등

나. “(3)”에 의해 표준수확량 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을 정한 경우에는 “가의 (ㄴ)”의 사항

- (5) “(4)”의 규정에 관계없이 감수종합단축방식 및 특정위험방식의 신청자에 대한 해당 과수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표준수확량은 “(4)”의 규정의 예에 의해 산정되는 표준수확량에, 花芽의 형성기부터 발아기(운주 밀감, 하밀감, 지정감귤 및 비파에 있어서는 春枝의 신장정지기부터 개화기)까지의 기간 내에서 과실의 감수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기간 내에 피해가 없었던 값을 1로 하고, 이 1로부터 해당 과수원에서의 현지조사에 의해 산정한 그 기간 내에 있어서의 피해비율을 공제하여 얻은 비율을 곱해 얻은 수치로 한다.

제2. 전상쇄방식

1. 감수종합방식

조합등이 준칙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구분등별, 과실의 연산별 및 신청자별로 정하는 표준수확량은 농업협동조합등의 협력을 얻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 (1) 조합등은 세구분등별 및 신청자별 최근 5개년의 출하자료로부터 각 연도의 10a당 수확량을 산출한다.
- (2) “(1)”에서 산출한 각 연도의 10a당 수확량으로부터 세구분등별 및 신청자별로 최근 4개년 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중간 2개년의 평균 10a당 수확량을 산출한다.
- (3) “(1)”에서 산출한 각 연도의 10a당 수확량으로부터 세구분등별 및 신청자별로 다음 식에 의해 10a당 수확량의 신장률을 산출한다.

$$\begin{array}{l} \text{10a당 수확량의} \\ \text{신장률} \end{array} = \frac{\begin{array}{l} \text{최근 4개년 중 가운데 2개년의} \\ \text{평균 10a당 수확량} \end{array}}{\begin{array}{l} \text{최근년의 전년까지의 4개년 중 가운데} \\ \text{2개년의 평균 10a당 수확량} \end{array}}$$

더욱이, 조합등은 최근의 수확량 추이의 상황, 세구분등별 과수의 수량 구성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10a당 수확량의 신장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4) 조합등은 “(2)”에서 산출한 평균 10a당 수확량에 “(3)”에서 산출한 해당 신청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10a당 수확량의 신장률 및 해당 신청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인수면적을 곱해 세구분등별 및 신청자별 표준수확량의 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을 정하도록 한다.
- (5) 조합등은 “(4)”에서 정한 표준수확량의 설정의 기초가 되는 수량 및 신청자에 관한 세구분등인 과수에 대하여 高接, 수체의 손상등이 있던 경우의 대목의 수량, 高接의 방법, 高接후의 경과년수, 수체의 손상정도,

손상후의 경과년수등을 참작하여 표준수확량을 결정한다.

2. 품질 방식

조합등은 “제2의 1”의 규정의 예에 의해 품질조정을 하지 않은 표준수확량을 설정하고, 여기에 다음의 방법에 의해 산출되는 품질지수를 곱해 얻은 수량을 해당 신청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품질방식의 표준수확량으로 하도록 한다.

(1) 품질지수

품질지수는 신청자별 및 세구분등별로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한다.

$$\text{품질지수} = \frac{\text{신청자의 1kg(1개)당 평균 평점수}}{\text{지역의 1kg(1개)당 평균 평점수}}$$

단, 이 식에 의해 산출된 품질지수를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분별로, 이 구분의 중앙치(해당 구분의 상한과 하한의 중앙치)로 해당 신청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품질지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구분은 0.1 이내의 등간격으로 하고, 아울러 그 중앙치가 1이 되는 구분을 포함하도록 한다. 또, 해당 지역의 전체 신청자별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품질지수의 전부가 0.95~1.05까지의 범위에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신청자의 모두에 대하여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품질지수를 1로 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역평균평점수

“(1)”의 지역의 1kg(1개)당 평균 평점수는 세구분등별로,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최근 2개년(이하 「기준년차」라 한다.)의 농업협동조합등이 가공 혹은 판매의 위탁을 받아, 또는 매도한 과실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자료(이하 「출하수량 및 품질에 관한 자료」라 한다.)를 근거로 삼아, 개인별로 평점평가 또는 累積点평가에 의해 과실의 품질의 등급설정(格付)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①의 산식에 의하며,

개인별로 등급(과실의 품위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이하 동일.)·계급(과실의 형상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이하 동일.)별로 과실의 품질의 등급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②의 산식에 의해 각각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circled{1} \quad & \frac{\text{지역의 1kg당 평균 평점수}}{\text{지역의 1kg(1개)당 평균 평점수}} = \frac{\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총 평점수 또는 총 累積点数}}{\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총 출하수량}} \\
 & \quad \quad \quad \Sigma \quad \frac{\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1kg(1개)당 점수}}{\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총출하수량(개수 또는 비율)}} \\
 \textcircled{2} \quad & \frac{\text{해당 지역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1kg(1개)당 점수}}{\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총 출하수량}} = \frac{\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총 수취금액}}{\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총 출하수량(개수)}}
 \end{aligned}$$

(3) 신청자의 평균 평점수

“(1)”의 신청자의 1kg(1알)당 평균 평점수는 세구분등별로 해당 신청자에 관한 기준연차에서의 출하수량 및 품질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개인별로 평점평가 또는 累積点평가에 의해 과실의 품질의 등급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의 ①의 산식에 의하며, 개인별로 등급·계급별로 과실의 품질의 등급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②의 산식에 의해 각각 산출한다.

$$\begin{aligned}
 \textcircled{1} \quad & \frac{\text{신청자의 1kg당 평균 평점수}}{\text{신청자의 1kg(1개)당 평균 평점수}} = \frac{\text{해당 신청자의 기준년차의 총 평점수 또는 총 積点数}}{\text{해당 신청자의 기준년차의 총 출하수량}} \\
 & \quad \quad \quad \Sigma \quad \frac{\text{해당 지역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1kg(1개)당 점수}}{\text{해당 신청자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총 출하수량(개수 또는 비율)}} \\
 \textcircled{2} \quad & \frac{\text{신청자의 1kg(1개)당 평균 평점수}}{\text{신청자의 1kg(1개)당 평균 평점수}} = \frac{\text{해당 신청자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총 출하수량(개수 또는 비율)}}{\text{해당 신청자의 기준년차의 등급·계급별 총 출하수량(개수 또는 비율)}}
 \end{aligned}$$

- (4) “(1)~(3)”에 의해 산정한 신청자별 품질지수는 通年 2년마다 산정하여 고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재배 기술, 비배관리의 상황등이 변해, 해당 신청자가 생산하는 과실의 품질의 정도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해마다 해당 신청자의 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품질지수를 산정하여 고치는 것으로 한다.

제3. 조합등은 표준수확량을 정할 때는 필요에 따라 손해평가회의 의견을 듣는다.

제4. 조합등이 정하는 표준수확량의 설정결과에의 조사

연합회는 조합등이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과실의 연산별 및 과수원별로 정한 표준수확량 설정 결과의 적부에 대해서, 조합등이 제출한 인수통지서의 부분에 의한 서면심사 또는 필요에 따라 조합등에서의 해당 설정경과의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는 조합등에 대해 적정한 표준수확량의 설정에 대하여 조언하도록 한다.

제2절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조합등별 단위당 수확량

제1. 도도부현지사가 정하는 조합등별 단위당 수확량

도도부현지사가 준칙 제12항의 규정에 의해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과실의 연산별 및 조합등별로 정하는 단위 수확량은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정하여 조합등에 통지하도록 한다.

1. 시정촌별 평균 단위당 수확량

- (1) 준칙 제12항의 시정촌별 평균 단위 수확량은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로, 현(도도부)내 쏜시정촌에 대하여 시정촌별 농림수산통계자료(농림수산통계자료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 작성한 과수에 관한 자료. 이하 동일.)에 의한 최근 7개년간의 각 연도별 단위 수확량을 기초자료로 하고, 이 중에서 전시정촌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7개년

중 가운데 5개년의 것, 6개년 중 가운데 4개년의 것, 5개년 중 가운데 3개년의 것, 4개년 중 가운데 2개년의 것 중의 하나)에 따라 선택하여, 그 선택한 것을 단순산술평균의 방법에 의해 평균하여 산출한 수량으로 농림수산성 경제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조정하여 얻은 수량으로 하도록 한다.

- (2) “(1)”에 의해 산출된 시정촌별 평균 단위 수확량이 해당 시정촌의 구역 내의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관한 과수의 수령별 면적, 과거의 수확량의 실적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1)”의 규정에 관계없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시정촌에 대한 해당 평균 단위 수확량을 수정할 수 있다.

2. 특별한 조합등의 단위당 수확량등

- (1) 조합등의 구역이 하나의 시정촌의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등 중, 그 구역이 2 이상의 시정촌의 구역과 일치하고 있는 농업공제조합(이하 이항 및 “(2)”, “3 및 4의 (2)”에서 「광역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광역조합에 관한 시정촌별 농림수산통계자료의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해당 시정촌별의 “1”에 의해 산출된 평균 단위 수확량을 산술 평균하여, 해당 광역조합의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를 산출한다.
- (2) 조합등의 구역이 하나의 시정촌의 구역과 일치하지 않는 조합등 중 광역조합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해당 조합등에 관한 시정촌의 “1”에 의해 산출된 평균 단위 수확량 및 농림수산통계자료로부터 해당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 및 재배면적을 추정한다.
- (3) 시정촌의 구역의 일부가 어떤 조합등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의 그 일부 지역(“3”에서 단순히 「지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에 의해 그 구역의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 및 재배면적을 추정한다.

3. 도도부현지사는 시정촌(그 구역이 하나의 조합등의 구역과 일치하는 시정

촌 및 그 구역의 전부가 어느 조합등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시정촌에 한한다.)별 농림수산 통계자료의 재배면적, 광역조합별 재배면적(해당 광역조합에 관한 시정촌별 농림수산통계자료의 재배면적을 합계하여 얻은 면적), “2의 (2)”의 조합등별의 “2의 (2)”에 의해 추정된 재배면적 및 지역별의 “2의 (3)”에 의해 추정된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시정촌(그 구역이 하나의 조합등의 구역과 일치하는 시정촌 및 그 구역의 전부가 어느 조합등의 구역에도 속하지 않는 시정촌에 한한다.)별의 “1”에 의해 산출된 평균 단위 수확량, 광역조합별의 “2의 (1)”에 의해 산출된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 “2의 (2)”의 조합등별의 “2의 (2)”에 의해 추정된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 및 지역별의 “2의 (3)”에 의해 추정된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를 산술평균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평균 단위 수확량을 산출한다.

4. “3”에 의해 산출된 도도부현의 평균 단위 수확량(해당 평균 단위 수확량에 관한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이 법 제85조 제11항의 구분이 정해진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것일 때는, 이것을 해당 도도부현의 구역 내의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관한 과수의 재배면적을 가중치로 하여 해당 도도부현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에 대해서 산술평균한 것)에 대한 과실의 연산별로 농림수산대신이 정하는 해당 도도부현의 해당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그 연산의 단위 수확량의 비율을 구해,

- (1) 조합등의 구역이 하나의 시정촌의 구역과 일치하는 조합등에 대하여는 그 비율을 “1”에 의해 산출한 해당 조합등에 관한 시정촌별의 평균 단위 수확량에 곱해 얻어지는 수량을 해당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 (2) 광역조합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2의 (1)”에 의해 산출된 해당 광역조합의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에 곱해 얻은 수량을 해당 광역조합의 단위 수확량으로서 결정한다.
- (3) “2의 (2)”의 조합등에 대해서는 그 비율을 “2의 (2)”에 의해 추정된 해당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의 개략적인 산술치에 곱하여 얻은 수량을 해당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으로 결정한다.

제2. 단위 수확량의 거치

도도부현지사는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해당 도도부현에 관한 그 연산의 단위 수확량이 前年産의 단위 수확량과 동일하고, 아울러 그 연산의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을 정하는 경우에 기초로 할 시정촌별 평균 단위 수확량이 前年産의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을 정하는 경우에 기초로 한 시정촌별의 평균 단위 수확량과 거의 차이가 없을 때는, “제1”에 관계없이, 前年産의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과 동일 수량을 그 연산의 조합등의 단위 수확량으로서 정할 수 있다.

제3. 농림수산대신에의 보고

도도부현지사는 “제1 또는 제2”에 의해 조합등별 단위 수확량을 결정하여 통지한 때는 지체 없이 그 조합등별 단위 수확량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수산대신에게 보고해야 한다.

더욱이, “제1의 1의 (2)”에 의해 시정촌별 평균 단위 수확량을 산출하여 단위 수확량을 정한 조합등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또 “제2”에 의해 조합등별 단위 수확량을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아울러 보고하도록 한다.

제3장 재해수입공제방식의 기준생산금액

제1. 기준생산금액의 설정

조합등이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기준생산금액 및 기준수확량의 설정에 관한 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별 및 신청자별로 정하는 기준생산금액은 농업협동조합등의 협력을 얻어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1. 조합등은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별 및 신청자별로, 최근 5개년의 농업협동조합등이 가공 혹은 판매의 위탁을 받아, 또는 매도를 받은 과실의 수량 및 가격에 관한 자료(이하 「출하수량 및 가격에 관한 자료」라

한다.)로부터 다음 식에 의해 각 연도의 10a당 생산금액을 산출한다.

$$\frac{10a당\ 생산금액}{10a당\ 생산금액} = \frac{총\ 판매금액 - 농업협동조합등이\ 공제하는\ 필요경비부분}{해당\ 신청자의\ 해당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인\ 과수의\ 재배면적}$$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이 공제하는 필요경비부분이란 농업협동조합등이 과실의 選果販賣를 하는데 있어서 통상 필요로 하는 경비(貨物회사 수수료, 출하단체 수수료, 집출하 경비, 출하 대책비 등)를 말한다.

2. “1”에서 산출한 각 연도의 10a당 생산금액으로부터 특정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신청자별 최근 5개년 중 가운데 3개년의 평균 10a당 생산금액을 산출한다.
3. “1”에서 산출한 각 연도의 10a당 생산금액으로부터 특정수확공제의 공제 목적의 종류별 및 신청자별로 다음 식에 의해 10a당 생산금액의 신장률을 산출한다.

$$\frac{10a당\ 생산금액의\ 신장률}{10a당\ 생산금액의\ 신장률} = \left(\frac{\text{최근 4개년 중 가운데 2개년의 평균 10a당 생산금액}}{\text{최근년의 전년까지의 4개년 중 가운데 2개년의 평균 10a당 생산금액}} \right)^2$$

더욱이, 조합등은 최근의 생산금액 추이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10a당 생산금액의 신장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4. 조합등은 “2”에서 산출한 평균10a당 생산금액에 “3”에서 산출한 해당 신청자의 해당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10a당 생산금액의 신장률 및 해당 신청자의 해당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에 관한 인수면적을 곱해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별 및 신청자별 기준생산금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정하도록 한다.
5. 조합등은 “4”에서 정한 기준생산금액의 기초가 되는 금액 및 신청자에 관한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인 과수에 대하여 高接, 수체의 손상등이 있는 경우의 대목의 수령, 고접의 방법, 고접후의 경과연수, 수체의 손상정도, 손상후의 경과 연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생산금액을 결정한다.

제2. 손해평가회에 의한 검토

조합등은 “제1의 5”에 의해 기준생산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는 손해평가회의 검토를 구하도록 한다.

제4장 공제금액

제1절 수확공제의 공제금액

제1. 공제금액

1. 반상채방식

반상채방식의 공제금액은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로 과실의 단위당 가액에, 과수원별 표준수확량의 합계에 상당하는 수를 곱해 얻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표준수확금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조합등이 정관등으로 정하는 최저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하회하지 않고 표준수확금액의 100분의 70(특정위험방식에 있어서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20조의 6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세구분이 정해진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있어서는 표준수확금액은 해당 세구분에 관한 과실의 단위당 가액에, 과수원별 해당 세구분에 관한 표준수확량의 합계에 상당하는 수를 곱해 얻은 금액을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대해 합계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2. 전상채방식

전상채방식의 공제금액은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로 과실의 단위당 가액에, 그 사람의 표준수확량에 상당하는 수를 곱해 얻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표준수확금액」이라고 한다.)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조합등이 정관 등으로 정하는 최저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하회하지 않고 표준수확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20조의 6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세구분이 정해진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있어서는 표준수확금액은, 그 자의 해당 세구분에 관한 과실의 단위당 가액에 해당 세구분에 관한 표준수확량에 상당하는 수를 곱해 얻은 금액을 해당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에 대해 합계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재해수입공제방식

재해수입공제방식의 공제금액은 특정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별 및 신청자별로, 제3장에서 정한 기준생산금액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조합등이 정관등으로 정하는 최저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하회하지 않고 기준생산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제2. 과실의 단위당 가액

“제1”의 과실의 단위당 가액은 법 제120조의 6 제7항(동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해 그대로 적용된 경우(讀替)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대신이 정한 해당 세구분등 및 동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대신이 정한 지역에 관한 과실의 단위당 가액으로 한다.

제2절 수채공제의 공제금액

제1. 공제금액

수채공제의 공제금액은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로, 공제가액에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60의 범위 내에서 정관 등으로 정하는 최저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하회하지 않고 공제가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

제2. 공제가액

조합등이 「수확공제의 표준수확량 및 수채공제의 공제가액의 설정에 관한 준칙」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로 정하는 공제가액은 다음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1. 신청자가 해당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인 과수를 반상채방식 혹은 전상채방식에도 부보(付保)하는 경우 또는 수채공제에만 부보(付保)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1) 공제가액의 산정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 공제가액은 해당 신청자가 재배하는 과수로서 해당 수채공제에 付保되는 것을 세구분등별로 구분하고, 그 구분된 과수를 다시 별표에 열거된 수령구분별로 구분하여, 그 구분된 과수(이하 「세구분등 및 수령구분별 과수」라 한다.)별 표준수확금액을 다음의 ① 식에 의해 산정하고, 다음의 ② 식에 의해 산정된 표준수확금액에 각각 해당 세구분등 및 해당 수령구분에 관한 별표의 환산계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로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

$$\begin{aligned}
 \text{① 수령구분별 과수별 표준수확금액} &= \frac{\text{해당 세구분등에 관한 “(2)”의 과실의 단위당 가액}}{\text{세구분등 및 수령구분별 과수별 표준수확량}} \times \text{세구분등 및 수령구분별 과수별 표준수확량} \\
 \text{② 공제목적의 종류 및 신청자별 공제가액} &= \sum (\text{세구분등 및 수령구분별 과수별 표준수확금액} \times \text{해당 수령구분에 관한 별표의 환산계수})
 \end{aligned}$$

(2) 수채공제에서의 과실의 단위당 가액

수채공제에서의 과실의 단위당 가액은 수확공제에 적용되는 과실의 단위당 가액을 이용하도록 하지만, 그 적용은 수채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의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① 그 개시시가 감수종합단축방식 및 특정 위험방식 이외의 수확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이 개시하는 때와 동일한 경

우는 그 수확공제의 공제책임기간에 관한 연산에 적용되는 前節 “제2”의 과실의 단위당 가액, ② 그 개시시가 이것과 다른 경우는 해당 수채공제의 공제책임기간의 개시전의 가장 가까운 때에 시작하고 있는 수확공제(감수종합단축방식 및 특정위험방식에 의한 수확공제를 제외)의 공제책임기간에 관한 연산에 적용된 同節 제2의 과실의 단위당 가액으로 한다.

(3) 세구분등 및 수령 구분별 과수별 표준수확량의 산정

“(1)”의 ①식의 세구분등 및 수령구분별 과수별 표준수확량은 “(2)”에 의해 적용되는 과실의 단위당 가액에 관한 연산과 동일한 연산에 대한 것으로 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해 정하도록 한다.

가. 해당 신청자가 해당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인 과수를 전상쇄방식 또는 반상쇄방식에 의한 수확공제에도 부보(付保)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라 다음의 수량으로 한다.

(가) 반상쇄방식

제2장 제1절 제1의 4에서 정한 세구분등별 및 과수원별 표준수확량을 세구분등별 및 신청자별로 합계하여 얻어지는 수량을 해당 수령구분에 속하는 과수의 식재면적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여 얻은 수량

(나) 전상쇄방식

㉠ 감수종합방식

제2장 제1절 제2의 1에서 정한 세구분등별 및 신청자별 표준수확량을 해당 수령 구분에 속하는 과수의 식재면적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여 얻은 수량

㉡ 품질방식

제2장 제1절 제2의 2에서 정한 세구분등별 및 신청자별 표준수확량을 해당 수령 구분에 속하는 과수의 식재면적등을 감안하여 배분하여 얻은 수량

나. 해당 신청자가 그 재배하는 과수를 수채공제에만 부보하는 경우에는 “가의 (가)”에 준해 정한 수량으로 한다.

2. 해당 신청자가 해당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인 과수를 재해수입공제방식에도 부보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 공제가액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text{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 및 신청자별 공제가액} = \sum \left[\begin{array}{cc} \text{수량구분별 과수별 기준생산금액} & \times \begin{array}{c} \text{해당 수량구분에 관한} \\ \text{별표의 환산계수} \end{array} \end{array} \right]$$

이 경우 수량 구분별 과수별 기준생산금액이란 제3장에서 정한 해당 신청자에 관한 기준생산금액을 해당 수량구분에 속하는 과수의 품종,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수량 구분별 과수별로 배분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3. 해당 신청자가 해당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인 과수를 반상쇄방식 또는 전상쇄 방식 및 재해수입공제방식에도 보험가입하는 경우에는,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 공제가액은, 재해수입공제방식 이외의 수확공제에 보험가입하는 과수에 대해서는 “1”에 따르며, 재해수입공제방식에 보험가입하는 과수에 대하여는 “2”에 따라 각각 산정하여, 이들을 수채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및 신청자별로 합계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장 인 수

제1절 조합등의 인수

제1. 과수원대장의 작성

1. 조합등은 법 제120조의 2 제1항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신청기간의 종료시

까지, 새로이 과수공제 가입이 예상되는 자의 과수원 전부에 대하여 공제목적 종류별로, 전상쇄방식과 재해수입공제방식 이외의 수확공제에 있어서는, 식재도(植栽圖) 및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과수원대장을, 전상쇄방식 또는 재해수입공제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과수원대장을 작성하도록 한다.

단, 식재도에 대하여는 동일 과수원에 동일 품종 또는 동일한 세구분에 속하는 품종이 식재되어 있는 것 등 손해평가에 있어서 발췌조사가 적절하게 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는 연합회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1) 공제 목적의 종류

(2) 품종명, 소재지(지명, 지번), 재배면적, 수령별 식재주수

(3) 과수원의 상황

(4) 비배관리의 상황

(5) 과수의 상황

가. 수체의 손해 상황

나. 高接의 상황

2. 조합등은 과수원대장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기타 과수관계단체의 협력을 얻도록 한다.

3. 조합등은 매년 가입신청서에 기초하여, “1”에 따라 작성한 과수원대장을 보정하도록 한다. 보정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 청취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2. 인수

1. 가입신청서

(1) 조합등은 매년 정관등이 정하는 신청기간내에 과수공제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시키도록 한다.

(2) 조합등은 계속가입을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가입신청서에 대신하여 전년의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3) “(2)”의 경우는 조합등은 전년의 가입신청서의 변경이 있던 사항을 기

입하여 정리하는 등 그 해의 가입신청의 내용이 명확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수의 방법

(1) 가입신청서의 배포 및 기재 사항의 지도

가. 조합등은 과수공제의 가입이 예상되는 사람에 대해 가입신청서를 정관등에서 정하는 신청기간의 개시전까지 배포하도록 한다.

나. 조합등은 손해평가원, 공제 연락원 등의 협력을 얻어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도록 한다.

(2) 가입 신청서의 검토

가. 조합등은 가입신청서가 제출된 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과수원 대장, 출하실적 등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한다.

(가) 오기, 기입누락, 허위신고의 유무 등

(나) 재배면적, 재배본수 및 예상수확량의 적정 기입여부

(다) 공제목적의 종류별로 해당 신청에 관한 과수가 그 사람이 해당 신청 때,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과수로서 신청할 수 있는 전부인지.

(라) 해당 신청에 관계되는 과수중에 수확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 또는 수체공제의 공제목적의 종류등별 재배면적이 법 제120조의 2 제1항의 정관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달하지 않는 과수는 없는지, 또 법 제120조의 3의 2 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는 특정위험 방식의 신청을 한 자의 과수의 재배에 관한 조건이 동조 제1항의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고 있는지.

(마) 방재시설의 신고가 있는 경우, 방재시설을 사용하여 재배되는 과수는 정확하게 기재되고 있는지, 또 신고된 방재시설은 할인의 대상이 되는 시설인지.

(바) 신청자가 해당 신청에 관한 과수를 전상쇄방식(감수종합방식, 품질방식) 또는 재해수입공제방식에 보험가입하는 것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신청자가 규칙 제17조의 2의 2, 제33조의 6의 5 또는 제33조의 6의 7에서 규정하는 사람에게 해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 해당 신청에 관계되는 과수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과수가 없는지.

- ① 수확공제 또는 수체공제에 보험가입한다고 하면 공제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 확실성을 가지고 간파되는 것. 예를 들면 비배관리가 현저하게 조방적인 과수, 散在樹, 법 제84조 제1항 제5호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과수 또는 그 사고의 원인이 발생하고 있는 과수.
- ② 표준수확량, 기준 생산금액 또는 공제가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과수에 관한 과실의 수확량, 생산금액 또는 해당 과수의 가액의 적정한 결정이 곤란한 것. 예를 들면, 재배방법 등이 통상적인 것과 현저하게 상이한 과수, 신품종의 과수.
- ③ 감수량 또는 손해의 금액의 적정하고 원활한 인정이 곤란한 것. 예를 들면, 관광농원에 식재되어 있는 과수, 현저하게 원격지에 있는 과수에서 원활한 손해평가가 곤란한 것.
- ④ 과실의 수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 기타 통상적인 비배관리가 행해지지 않거나 혹은 행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것. 예를 들면, 관상용의 과수, 시험연구용 과수.

나. 조합등은, “가”에 의한 검토의 결과, 不備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회의 위원, 손해평가원, 공제연락원등의 협력을 얻어, 청취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재배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不備한 점이 있을 때는, 그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사실을 명시하여 가입신청서의 정정을 받도록 한다.

(3) 인수의 확정 및 신청의 승낙

가. 조합은 “(2)”의 검토결과에 의한 가입신청서에 기초하여 신청자별 인수확정을 하고,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가입승낙의 뜻과 불입할 공제요금, 납입기한 및 납입장소를 통지하도록 한다.

신청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신청의 승낙은 공제책임기간의 개시전에 하여야 한다.

다. “(2)의 나”에 의해 가입신청서의 정정을 요구받은 자가 그 정정에 응하지 않을 때는 조합은 해당 신청의 승낙을 거부하는 것으로 한다.

(4) 기타

가. 조합등은 신청자로부터 “(3)의 가”에서 확정된 사실이 사실과 상위 하거나 오해가 있다는 뜻의 통지가 있었거나 조합등이 이것을 발견한 때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아울러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될 때는 가입신청서를 정정해 두도록 한다.

나. 조합등은 “가”에 의해 가입신청서의 정정을 한 때는 그 뜻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조합등은 “가”에 의해 정정된 가입신청서에 기초하여 신청자별 인수의 재확정을 하도록 한다.

(5) 인수통지서의 작성 및 제출

가. 조합등은 “(3)”에 의해 신청자별로 인수의 확정을 한 때는 연합회가 정하는 기일까지 인수통지서를 작성하여, 방재시설할인의 적용을 받는 자가 있는 조합 및 위험단계기준요금률을 설정하고 있는 조합등에 있어서는 공제요금집계표를 첨부하여 연합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수통지서 작성상 유의할 사항

- ㉠ 기준공제요금률, 표준수확량(재해수입공제방식에 있어서는 기준생산금액), 공제가액등에 대하여는 오류 없이 기재함.
- ㉡ 전년의 인수에 대하여 인수호수 또는 인수면적이 현저하게 변동한 조합등에 있어서는 그 이유를 기재한다.

(6) 인수통지서의 변경

조합등은 이미 제출한 인수통지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된 때는 신속하게 다시 인수통지서를 작성하여 변경이유를 그 통지서의 「적요」란에 부기하여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절 연합회의 인수

제1. 인수통지서의 제출 기일

연합회는 인수통지서의 제출 기일을 미리 정하고, 조합등에 대하여 그 기일까지 인수통지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2. 조합등별 인수의 확정

1. 연합회는 조합등으로부터 제출된 인수통지서 및 공제부금집계표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심사 검토한 다음, 조합등별 인수의 확정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인수호수, 인수면적, 인수주수, 표준수확량(재해수입공제방식에 있어서는 기준생산금액) 또는 공제가액이 前年産의 인수실적에 비해 현저하게 증감이 있으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기타 그 내용에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조합등에 조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不備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시키도록 한다.
2. 연합회는 “1”에 의한 인수의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현지에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도도부현지사에게 연락한 다음, 필요가 있으면 협력을 요청하여 해당 조합등의 인수사무의 처리 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기초해 적정한 인수가 행해지도록 조합등을 지도하도록 한다.

제3. 조합등별 인수의 재확정

연합회는 “제2의 1”에 의해 조합등별 인수의 확정을 한 뒤에, 조합등으로부터 “제1절 제2의 2의 (6)”에 따라 변경된 인수통지서가 제출된 때는 “제2”에 준해 조합등별 인수의 재확정을 하도록 한다.

제4. 재보험 인수통지서의 작성 및 제출

1. 연합회는 조합등별 인수의 확정을 한 때는 재보험 인수통지서를 작성하여 조합등의 인수통지서 및 공제부금 집계표의 부분을 첨부하여 도도부현지사를 경유한 다음, 다음의 기일까지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목적의 종류	감수종합단축방식 및 특정위험방 식 이외의 수확공제 및 수채공제	감수종합단축방식 및 특정위험방 식에 의한 수확공제
운주밀감	11월 15일	8월 말일
하밀감	11월 15일	8월 말일
지정감귤	11월 15일	8월 말일
사과	10월 말일	7월 말일
포도	9 월 말일	7월 말일
배	9 월 말일	7월 말일
복숭아	11월 15일	7월 말일
앵두	10월 말일	7월 말일
비파	9 월 말일	5월 말일
감	10월 말일	7월 말일
밤	10월 말일	7월 말일
매실	10월 말일	7월 말일
자두	10월 말일	6월 말일
키위후루츠	10월 말일	7월 말일
파인애플	10월 말일	8월 말일

2. 연합회는 이미 제출한 재보험인수통지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을 초래한 때는, 다시 재보험 인수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변경에 관한 조합등의 인수통지서 및 공제요금집계표의 부분, 조합등별로 그 이유를 명기한 서면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수체공제의 수령구분별 환산계수

수 체 공 제 의 공 제 목 적 의 종 류 등																											
온주 밀감		하밀감		지정 감귤		사과		포도		배		복숭아		앵두		비파		감		밤		매실		자두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수령 구분	환산 계수		
1 5년	29	1 5년	33	1 5년	23	1 5년	55	1 5년	16	1 5년	35	1 5년	24	1 10년	22	1 5년	12	1 5년	59	1 5년	42	1 5년	13	1 5년	1 5년	18	
6년 1 10년	36	1 10년	39	1 10년	43	1 10년	32	1 20년	14	1 10년	20	1 10년	19	1 15년	36	1 10년	17	1 10년	48	1 10년	31	1 10년	17	1 15년	1 15년	20	
11년 1 15년	29	1 15년	46	1 15년	31	1 15년	24	1 25년	12	1 15년	18	1 15년	14	1 25년	37	1 15년	23	1 15년	30	1 15년	17	1 15년	25	1 20년	1 20년	17	
16년 1 20년	27	1 20년	27	1 20년	27	1 20년	21	1 30년	09	1 20년	17	1 20년	12	1 30년	28	1 25년	26	1 20년	25	1 20년	15	1 20년	26	1 25년	1 25년	12	
21년 1 25년	26	1 25년	19	1 25년	26	1 30년	20	31년 이상	04	1 25년	16	21년 이상	06	1 35년	21	1 30년	27	1 30년	24	1 25년	11	1 30년	27	26년 이상	06	06	
26년 1 35년	25	1 35년	18	1 30년	24	1 35년	19	/		26년 1 30년	15	/		36년 1 40년	12	1 35년	23	1 35년	22	26년 이상	05	1 35년	20	/		/	
36년 1 40년	23	1 40년	16	1 35년	22	1 40년	18			31년 1 35년	13			41년 이상	04	1 40년	17	1 40년	20	/		36년 1 40년	10				
41년 1 45년	21	1 45년	15	1 40년	18	1 45년	16	/		36년 1 40년	10	/		/		41년 1 45년	08	1 45년	19	/		41년 이상	04	/		/	
46년 1 50년	17	1 50년	12	1 45년	14	1 50년	13			41년 이상	04					/		/				46년 이상	03				1 50년
51년 1 55년	12	1 55년	09	46년 이상	06	51년 1 55년	10	/		/		/		/		/		51년 1 55년	13	/		/		/			
56년 이상	06	56년 이상	04	/		56년 이상	05			/		/		/		/		56년 이상	06	/		/		/			

서류양식 목록

서 류 명		양식번호	제 출 처	제 출 기 한
조 합 원 등	과수공제가입신청서 " 과수공제요금(분납/연납)납입신청서 " 출하계획서	예제5호 예제6호 예제7호의1 예제7호의2 예제8호		조합등이 정관에 정한 기일
조 합 등	표준수량표(안) 표준수확량 그래프(안) 원지대장검 식채도 표준수확량 및 공제금액의 설정 및 공제요금산정경과표 " 기준생산금액 및 공제금액의 설정 및 공제요금산정경과표 공제요금계산표 과수공제요금불입통지서 공제요금집계표 인수통지서 (반상쇄방식, 전상쇄방식) " (재해수입공제방식) " (수체공제)	제1호 제2호 예제4호 예제9호 예제10호 예제11호 예제12호 예제13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	도도부현 (1부) 연합회 (2부) 도도부현 (1부) 농림수산성(1부)	작성한 때 연합회가 정한 기일
연 합 회	재보험인수통지서 (반상쇄방식, 전상쇄방식) " (재해수입공제방식) " (수체공제)	제18호 제19호 제20호	도도부현 (1부) 농림수산성(1부)	※ 아래의 표 참조(이 곳에 삽입)
도 도 부 현	표준수량표 표준수확량그래프 조합등별 10a당수확량결정보고서	제1호 제2호 제3호	농림수산성(1부) (통지)연합회(1부) 조합등(1부) 농림수산성(1부)	작성한 때

주의 : 양식번호중 「예」가 있는 것은, 예로서 나타난 것이므로, 이것에 준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다.

D150-1

일본의 과수공제 인수요강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01. 1.

발 행 2001. 1.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000 팩시밀리 02-965-6950 [http : //www..krei.re.kr](http://www..krei.re.kr)

인쇄처 (주) 문원사 02-739-3911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